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대 중 문 화 교 류 위 원 회 의 설 치 및 운 영 에 관 한 규 정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악·드라마·영화·게임 등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교류·협력 민관협업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목적(안 제1조)

- 1)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

나. 위원회의 기능(안 제3조 2항)

- 1) 대중문화교류 비전·전략 수립, 대중문화 교류·협력 사업 조정, 민관협력 사업 발굴 추진, 대중문화 확산 사업 수행 등의 심의·조정 등을 하려는 것임

다. 위원회의 구성, 임기 등(안 제4, 5조)

- 1)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위촉위원

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함

2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

라. 지원조직 (안 제9, 10, 11조)

- 1)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, 특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설치할 수 있음
- 2)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을 두며, 관계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

4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편성 필요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한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“대중문화”란 음악, 드라마, 영화, 게임 등 일반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대중문화교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대중문화교류정책의 비전 수립 및 중장기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
2. 주요 대중문화교류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협업과 조정에 관한 사항
3. 대중문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
4. 대중문화 관련 투자 및 자원 배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5. 대중문화 관련 해외홍보, 국제교류·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
6. 대중문화 관련 법·제도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7. 대중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산업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며,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(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)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.

1. 기획재정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외교부차관, 법무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농림축산식품부차관, 산업통상자원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.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.
2. 대통령비서실의 문화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
3. 대중문화정책 관련 기술·경제·인문·사회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
-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,

간사위원은 부위원장인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(前任)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(後任)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7조(공동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(이하 “공동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민간 공동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,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단독으로 수행한다.

③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

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·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분과위원회·특별위원회 및 자문단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국내외 대중문화 교류증진 또는 대중문화정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국내외 전문가 등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대중문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)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1조(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)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

제12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,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,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, 국내외 홍보 등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, 분과위원회·특별위원회의 위원, 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,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4조(존속기한)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	
연 락 처	044 - 203 - 2425